

제7대 의회 의안정리권 위임의 건

인천광역시의회

제7대 의회 의안정리권 위임의 건

의안 번호	33
----------	----

제의연월일 : 2014년 7월 14일

제 의 자 : 인천광역시의회의회장

1. 주 문

- 수입자 : 의장 또는 위원회

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소관 위원회에, 그 밖의 안건은 의장에게 의안 정리권을 위임”하여 처리함

- 의안정리권의 위임 범위

- 명백한 오자, 탈자, 누락 등 착오발생사항 정리
-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수정한 부분이 누락된 경우의 보완
- 띄어쓰기, 부호 등 맞춤법에 맞추기 위한 정리
- 인쇄상 오류, 예산안의 숫자정리, 구두점 등에 대한 보완

- 의안정리의 한계

- 의안의 정리 범위는 명백한 오자나 오류 등에 한하여 정리할 수 있으며, 의안의 정책적 내용면까지 실질적으로 조정은 불가함.

2. 제안이유

- 본회의에서 의안이 의결된 후에 서로 저촉되는 조항, 문구,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.

- 이러한 사항을 의사진행 중에 일일이 회의에 부의하여 정리한다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사운영이 지체되므로 의사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편의적인 조치가 필요함.

3. 관련근거

-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
 -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는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·문구·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음.

4. 참고사항

- 제6대 의회 의안정리권 위임
 - 2011.12.16. 제197회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위임
 - 의 장 :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의결하는 안건
 - 위원회 :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안건